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의 안 번 호	3695

2026년 6월 15일
교 통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 안 자 : 성흠제 의원 외 10명

나. 제안일자 : 2026년 5월 26일

다. 회부일자 : 2026년 5월 27일

라. 상정일자

○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2026년 6월 15일 상정 ·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성흠제 의원)

가. 제안이유

○ 전기자전거 이용 증가에 따라 충전시설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충전 목적과 관계없는 장시간 주차 등으로 인해 실제 충전이 필요한 이용자의 사용이 제한될 우려가 있음

○ 그러나 현행 조례는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 및 유지관리 사항만 규정하고 있어,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질서에 관한 기준은 미비한 실정임

○ 이에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이용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여 충전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가. 전기자전거 충전소는 충전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충전 외의 주차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함(안 제10조의2제3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6. 5. 30. ~ 2026. 6. 3.

○ 제출의견 : 없음

라.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1)]

○ 제출의견 : 원안가결

- 전기자전거 이용 증가에 따라 충전시설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충전 목적 외로 장기간 주차 등으로 이용자 불편이 발생될 우려가 있고 현행 조례는 충전소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어 이용질서에 대한 기준은 미비한 실정임
-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충전소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준을 조례에 명시하여 안전하고 공정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 동의함

1) “의원발의 의안에 대한 의견 제출” 보행자전거과-8030호(2026.6.2.)

4.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장훈)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목적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 전기자전거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함께 전기자전거 이용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현행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에 따르면 '시장·구청장 등은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2]하고 있음

○ 서울시는 전기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지난 2019년에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에 관한 사항'을 현행 조례에 규정하였음[3]

---

2)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전거주차장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3)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0조의2(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① 시장은 자전거주차장 또는 그밖에 필요한 장소에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관리자는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상시 점검·보수하여야 하며,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동 개정조례안은 전기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충전소를 주차 용도가 아닌 충전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임

○ 서울시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 주차장, 자전거 보관소 등의 자전거 주차시설은 4,846개소로[4] 대부분 자치구에서 설치하여 직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 전기자전거 충전소가 설치된 자전거 주차장은 전무한 실정임[5]

○ 현재 서울시가 설치·운영 중인 전기자전거 충전소가 없는 상황에서 동 개정조례안의 직접적인 정책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에 대비하여 이용 목적을 명확히 규정한다는 예방적 측면에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 이와 함께 동 개정조례안에서 충전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대한 관리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볼 때 향후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운영 시 별도 관리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

4) 자전거주차시설 현황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2025.8.기준)

구 분	계	자전거 주차장	자전거보관소	이외 주차시설
지점(개소)	4,846	30	6	4,810

5)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현황 (서울시 내부자료)
- 공공 충전소 : 현재 설치·운영 중인 공공 충전소 없음 /
- 민간 충전소 : 일반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민간 전기 충전시설은 설치·운영되고 있지 않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흠제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695

발 의 년 월 일 : 2026년 05월 26일
발 의 자 : 성흠제 의원(1명)
찬 성 자 : 강석주, 김규남, 김길영, 김성준, 김원태, 남창진, 박수빈, 박칠성, 봉양순, 송도호 의원(10명)

1. 제안이유

○ 전기자전거 이용 증가에 따라 충전시설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충전 목적과 관계없는 장시간 주차 등으로 인해 실제 충전이 필요한 이용자의 사용이 제한될 우려가 있음.

○ 현행 조례는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 및 유지관리 사항만 규정하고 있어,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질서에 관한 기준은 미비한 실정임.

○ 이에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이용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여 충전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기자전거 충전소는 충전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충전 외의 주차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함(안 제10조의2제3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전기자전거 충전소는 충전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충전 외의 주차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의2(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①·② (생 략) <신 설>	제10조의2(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전기자전거 충전소는 충전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충전 외의 주차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기자전거 이용 증가에 따라 충전시설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충전 목적과 관계없는 장시간 주차 등으로 인해 실제 충전이 필요한 이용자의 사용이 제한될 우려가 있으므로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이용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여 충전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안 제10조의2(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제3항은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올바른 이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자율적 통제 및 행정적 조치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
재정분석과장	이 선 희
입법재정자원1팀장	김 선 희
추 계 분 석 관	김 경 명

☏ 02-2180-7955

e-mail : kimkmi0809@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